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
변경사항 반영하고 요금감면 및 요금조정 대상 추가

3. 주요내용

가.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
용어 변경사항 반영

- 현행 : 시설분담금 → 개정 : 원인자부담금

나. 긴급누수복구공사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(안 제41조의 2)

다. 가구별 요금조정 대상에 전원주택단지 추가(안 제32조)

라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○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요금감면 조항에 긴급누수복구공사로 인한 내용을 명시하고 가구별 요금조정 대상에 전원주택단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